

제 2 6 0 회 임 시 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5월 14일(월)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기 봉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일 박재국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 (3) 사업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함

- (2) 위원은 도와 해당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분야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연임 가능
-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공여구역²⁾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은 전국적으로 65개시군 325개 읍면동에 761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도는 청주시 외남동과 외하동, 청원군의 내수읍과 외평동 5천2백평이 있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으며

2)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함.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절차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위원장 : 행자부 장관)에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음.

본 조례안에서 구성되는 지방발전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참고자료]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구역 현황

시도별	미군 기지수	공여구역 면적(평)	구성비	주변지역 등	
				시군	읍면동
계	89	76,072,461	100%	65	325
부 산	5	386,259	0.51%	5	11
대 구	5	1,241,988	1.63%	4	21
인 천	2	158,531	0.21%	2	7
광 주	1	369,728	0.49%	1	2
대 전	2	40,359	0.05%	2	2
경 기	54	63,354,487	88.54%	20	158
강 원	5	964,194	1.26%	8	32
충 북	1	5,202	0.01%	2	4
충 남	1	12,508	0.02%	2	7
전 북	2	3,140,036	4.13%	1	8
경 북	6	938,451	1.23%	10	47
경 남	4	1,445,653	1.90%	6	23
제 주	1	15,065	0.02%	2	3